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진로·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진로·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(기능 등)에서 현행 조례상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진로·진학 등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정보의 제공을 추가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리 구는 2014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대학입학 정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‘진로탐색-학습 역량강화-진학’을 결합한 원스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여 진로·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에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한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정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5. .

발 의 자 : 우정란, 최봉희, 유승용
신흥식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역내 중·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 상담,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5. 2. ~ 2023. 5. 6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진로에 관한 프로그램”을 “진로,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체험프로그램”을 “진로·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각종 교육정보”를 “진로·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. 진로·진학 상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능 등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인성, 적성 및 <u>진로에 관한 프로그램</u></p> <p>3. <u>체험프로그램</u> 개발 및 운영</p> <p>4. <u>각종 교육정보</u> 수집 및 제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~ 7. (생 략)</p>	<p>제5조(기능 등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진로,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</u></p> <p>3. <u>진로·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</u></p> <p>-----</p> <p>4. <u>진로·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</u>의 -----</p> <p>5. <u>진로·진학 상담</u></p> <p>6. ~ 8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